

2026년

6월부터

달라지는



약사법

개정사항

인체용 전문의약품

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

(2026년 6월 21일 시행)

2026년 6월부터
이렇게 달라집니다.

국민 안전 중심의 투명한 의약품 유통관리

약국에서 **동물병원** 개설자에게
전문의약품을 **판매**한 경우 **판매 내역을**
제출해야 합니다.

관련 법적 근거는?

약사법 제50조제2항 인체용 전문의약품은 약국 개설자를 통해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 가능하고, 판매내역 현황을 **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**에 제출해야 합니다.

보고 대상은?

인체용 전문의약품(동물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제외) 판매내역을 **판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** 제출해야 합니다.

보고 항목은?

정해진 서식에 따라,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 및 판매한 의약품 정보 (표준코드, 수량, 일자, 금액 등)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.

※ 약사법 시행규칙 및 별지 서식 참고